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입학전형 시행계획

I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전기 (3월입학)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면접고사	2025. 1. 7.(화) ~ 2. 4.(화) 중 2일	
	합격자 발표	2025. 2. 7.(금) 이전	
	합격자 등록	2025. 2. 10.(월) ~ 2. 12.(수)	
후기 (9월입학)	원서접수	2025. 6 ~ 8월 중 실시 예정	2025년도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5년 6 ~ 8월 중 실시예정
	면접고사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II

모집인원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선발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인 및 결혼이주민(「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선발

Ⅲ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 집 단 위 명	입학정원	모집인원	
				재외국민(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제외)/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인 및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인문 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18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학과별 약간명
		영어영문학과	17		
		중국언어와문화학과	18		
		일어일문학과	18		
		문화콘텐츠학과	20		
		사학과	19		
		고고문화인류학과	22		
		자율전공인문학부	37		
		글로벌학부	1		
사회 과학 대학	인문	도시및지역개발학과	24		
		지적학과	29		
		사회복지학과	23		
		도시·지적·복지학부	16		
		법학과	31		
		행정학과	27		
		정치언론홍보학과	18		
		공공인재학부	17		
자연 과학 대학	자연	반도체응용물리학과	17		
		화학과	17		
		생명과학과	23		
		기초과학부	13		
		식의약자원개발학과	18		
		원예과학과	21		
		해양수산자원학과	20		
식의약·원예·해양자원학부	17				
공과 대학	자연	기계공학과	28		
		첨단재료공학과	19		
		조선해양공학과	30		
		기계·조선·첨단재료자율전공학부	15		
		전기및제어공학과	50		
		정보전자공학과	23		
		정보통신공학과	22		
		전기·전자·통신자율전공학부	24		
		컴퓨터공학과	26		
		융합소프트웨어학과	19		
		정보보호학과	25		
		컴퓨터·정보보호학부	14		
		건축공학과	24		
		토목공학과	21		
		식품공학과	22		
		환경공학과	17		
		조경학과	19		
		거주공학·토목공학·환경공학· 식품공학·조경학자율전공학부	26		
건축학과(5년제)	30				

대학	계열	모 집 단 위 명	입학정원	모집인원	
				재외국민(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제외)/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인 및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경영 대학	인문	경영학과	40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학과별 약간명
		경제학과	31		
		무역학과	19		
		금융보험학과	23		
		관광경영학과	22		
		전자상거래학과	22		
		경상학부	30		
생활 과학 예술 체육 대학	인문	아동학과	23		
		식품영양학과	22		
	자연	패션의류학과	23		
		아동·식품·패션학부	14		
	예체능	음악학과	30		
		미술학과	30		
		체육학과	36		
계	58개 학과(부)	1,320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	

※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간호학과, 사범대학 및 약학대학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 건축학과는 수업연한이 5년임

※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학력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IV

지원자격

가.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은 학력 미인정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다)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라)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 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2)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은 학력 미인정

【일반적 자격기준】

구분	지원 자격	비고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외국인 어학능력 최소 자격 요건(택일)】

- **한국어 어학자격 조건**
 -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이상 취득자
 - ▶ 단, 예체능 계열 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이상 취득자
- **영어 어학자격 조건**
 - PBT TOEFL 550점(IBT TOEFL 80점, CBT TOEFL 210점), IELTS 5.5, TEPS 297점, TOEIC 700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 취득자
-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의 경우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함
- 모든 시험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시험성적만 인정함

나.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은 학력 미인정
- ☞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학력 인정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결혼이주민(「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복수국적자 제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국인 어학능력 최소 자격 요건(택일)】

- **한국어 어학자격 조건**
 -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이상 취득자
 - ▶ 단, 예체능 계열 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이상 취득자
- **영어 어학자격 조건**
 - PBT TOEFL 550점(IBT TOEFL 80점, CBT TOEFL 210점), IELTS 5.5, TEPS 297점, TOEIC 700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 취득자
-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의 경우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함
- 모든 시험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시험성적만 인정함

V

전형방법 및 합격자 선발방법

가. 전형방법 : 면접고사 100%

나. 전형요소별 배점 및 비율

구 분	모집단위	면접고사	비 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든 모집단위	100%(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능력 40점 ▪ 전공소양 30점 ▪ 인·적성 15점 ▪ 사고력 15점

※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함

다. 합격자 선발방법

- 1) 모집단위별 전형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입학정원 2% 이내 모집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당)
- 2) 지원자격 미달자는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
- 3) 해외거주 외국인은 전화면접 시 **화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만 면접고사 응시 가능
 - 화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 불가능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
- 4) 면접고사 대상자가 면접고사에 결시하거나 **면접고사 만점의 6할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 5) 모든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
- 6) 예비순위자는 선발하지 아니함
- 7)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 시 추가 충원하지 아니함

VI

제출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8. 여권 사본(부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2.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3.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p>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 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7. 신분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